

# 옥구초등학교 규칙

[시행 2019.7.8.] [2019.6.19., 전부개정안 발의]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옥구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2. “조기졸업”이란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5학년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3. “조기입학”이란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급학교 조기입학”이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우리 학교는 옥구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위치)** 옥구초등학교는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50에 둔다.

##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옥구초등학교(이하 “옥구초”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옥구초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하며, 학년도마다 한 학년씩 진급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관련하여 옥구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옥구초의 학년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옥구초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여름휴가)

3. 겨울방학(겨울휴가)
4. 학년말방학(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4월 1일
6. 학교장재량휴업일
7. 기타 공문서에 의한 특정 휴일

② 제1항 제2-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편성)** 옥구초의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성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 ① 옥구초의 학급수와 학급당 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 4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옥구초에 특수학급을 편성한 경우에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은 옥구초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옥구초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

수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참학력 신장을 위한 성장평가를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3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옥구초의 수업은 주간제 및 전일제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타 교외체험학습은 해당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지침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하에 실시한다.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를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 5 장 수료 · 졸업 · 출결석 처리

-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옥구초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옥구초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옥구초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준다.

- 제15조(출결석 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 6 장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입학

- 제16조(입학)** ① 옥구초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 대상 아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옥구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 ② 다른 학교의 입학 대상자로 지정된 아동이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에 거주하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옥구초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입학할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는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 제17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재취학 또는 편입학 시기는 옥구초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읍(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옥구초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③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전입학 절차와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 제19조(청강생의 수학 허가)** ① 청강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다른 학교 학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학 절차 없이 보호자와 학생의 요청으로 옥구초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규정한다.
- ②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학부모의 동의하에 수학의 허가를 신청한 청강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수학할 수 있다.

##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제2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

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은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학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장, 교육장 등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예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나 제20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옥구초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구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이 조에서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구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3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 ④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 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학년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 ⑤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 9 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 제25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1조,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 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초등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학년을 배정하기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세부규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면제·유예자의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제26조(방침)** ①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재취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관리나 면제·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인정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당학년 학업수행능력 판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운영)** 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학년 판정
5.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절차

1.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 판정
2.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적격여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4.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인정기준에 의하여 학년 판정
5. 학교장의 학년 결정

교과이수인정평가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판정	학생·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신청,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 서류심사결과 검토 - 학생·학부모의 의견고려 - 학생의 정서 및 학교적응력 등 고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학년 판정	학교장의 학년 결정

④ 평가 대상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나 유예결정

을 받은 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2. 귀국학생: 서류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 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3.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옥구초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평가 교과목: (1~6학년) 국어, 수학

⑥ 평가 방법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지필평가, 수행평가

2. 귀국학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 및 수행평가로 하되, 면접이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⑦ 평가 내용: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⑧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평가도구는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제작하거나 선정한다.

⑨ 평가 시기: 평가대상자가 있을 시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⑩ 평가 기준: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의 편입학 학년 결정)

①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판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된 자는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실시 후 2일 이내에 학년배정 결과를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제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9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 제 11 장 학생생활

- 제30조(학교생활규정 등)** ① 학교장은 옥구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옥구초 학생의 인권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2 장 학교규칙 개정

- 제31조(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옥구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옥구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옥구초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2. 옥구초 학생회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외의 의결서 첨부)
  3.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 또는 변경으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심의위원회는 학칙 개정안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 ⑤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결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장에게 보낸다.
- ⑥ 학교장은 개정 학칙을 지체 없이 공포한다.

## 제 13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32조(기타 법령의 적용)** 본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